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2. 23

나. 제 출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2. 2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0. 2.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6조)

○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안 제10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전에는 정보공개 심의기구가 없었는가?	○ 문서평가위원회에서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었음
○ 심의회 위원이 모두 실·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유명무실한 심의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문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보았지만, 너무 제한적으로 묶어 놓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작년에 심의 후 미공개한 건수는?	○ 부분공개가 1건, 미공개가 2건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90호
의결년월일	2000. 3. 3 (제77회)

제출년월일 : 2000. 2.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6조)

○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안 제10조)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시에 두는 심의회는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시심의회"라 한다)라 하고 구에 두는 심의회는 부천시○○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구심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시심의회 구성) ①구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세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실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구심의회 구성) ①구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봉사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당연직으로 각 과장이 된다.

제6조(사업소 등)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는 자체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 심의회
2. 동 : 관할 구심의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회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에서 신청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구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